

의안번호	제 421 호
의 결 연 월 일	2009년 9월 일 (제 283 회)

**「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」에
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**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09년 9월 3일

『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』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

의안 번호	42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년 9월 3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『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(2005.1)』 수립 이후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「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 (2008.9.30)」을 발표하고 「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」을 개정(2008.11.3)함.
-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그동안 관계 전문가 및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거쳐 대전광역시·충청북도지사·충청남도지사가 공동 입안하고,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 회(대전광역시, 충청북도, 충청남도) 의견을 듣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목표년도 : 2020년 (변경 없음)
- 공간적 범위 : 4,633.87km² (대전광역시, 충청남·북도 일원 변경 없음)
- 계획인구 : 275만명 (변경 없음)
- 주요변경 내용
 - 기 수립된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골격 유지
 -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대전권 개발제한구역(대전, 충청남·북도) 해제허용총량 추가 확보

<개발제한구역 조정(변경) 내역>

- 대전시 : 도시기반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용지와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 상용화 첨단산업용지 추가확보

- 충청북도 : 청원군, 옥천군 산업용지 추가확보
- 충청남도 : 계룡대 해군아파트와 계룡시 하수처리장내 개발 제한구역의 합리적 경계조정

[개발제한구역해제 허용총량(변경)]

(단위 : km²)

구 분	계	대전광역시	충청북도	충청남도
당 초	31.279	24.023	4.141	3.115
변 경	39.925	31.229	5.383	3.313
증·감	8.646 (27.6%)	7.206 (30%)	1.242 (30%)	0.198 (6.4%)
활용용도		첨단 산업용지	산업용지	군사시설 하수처리시설

- ※ 참고 1) 광역도시계획은 개발제한구역해제 허용총량을 정하고, 해제위치 도면과 조서 등은 작성하지 않음.
2) 구체적인 해제위치, 개발방안 등은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사업 계획수립 과정에서 검토·확정하므로 계획의 유연성이 확보됨.

3. 구하고자 하는 의회 의견

- 지역경제 활성화 및 「서민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 구역 조정 관리계획」(국무회의 의결, '08. 9. 30)과 개정된 광역 도시 계획수립지침('08. 11. 3)에 의거,
- 개발제한구역 기존 해제가능총량 4.141km²(청원 2.634, 옥천 1.507)의 10~30%를 추가로 해제할 수 있어,
- 추가해제 가능한 30%인 1.242km²(청원 0.79, 옥천 0.452)를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도의회 의 의견

4.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(안)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(안)

- 대전광역시, 충청북도·충청남도 일부지역 -

2009. 9

대전광역시·충청북도·충청남도

목 차

I. 계획수립의 개요	13
1. 광역도시계획의 성격	13
2.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배경	13
3.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의 배경	13
4.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범위	13
II. 현황 및 특성	14
1. 현황분석	14
2. 발전잠재력 및 제약요인	15
3. 향후여건변화와 전망	15
4. 전략과제	15
III. 계획의 목표와 전략	16
1. 대전광역권의 미래상	16
2. 기본목표	16
3. 계획의 목표	16
4. 기본전략	16
5. 세부전략 및 원칙	16
6. 주요지표	16
IV. 공간구조 구상	18
1. 대전광역도시권의 공간적 위상	18
2. 공간구조 진단	18
3. 공간구조 개편방향 및 전략	18
4. 공간구조 구상	19
5. 생활권중심의 다핵화 추진방향	21
V. 부문별 계획	23
1. 광역토지이용	23
2. 녹지, 경관 및 여가	25
3. 광역교통	27
4. 광역공급 및 이용시설	29
5. 방재	30
6. 환경보전	31
VI. 개발제한구역의 조정	33
1.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기본방향	33

2. 시도별 해제총량 설정 및 활용방안	34
VII. 집행 및 관리계획	35
1. 광역도시계획 집행체제	35
2. 광역도시계획의 관리	36
3. 투자우선순위 및 자원조달	36

표 차 례

<표 III-1> 주요 생활환경지표	17
<표 IV-1> 생활권별 정비과제	21
<표 VI-1> 제척기준	33
<표 VI-2> 해제가능총량의 종합	34

그 림 차 례

<그림 I -1> 대전광역도시권 공간범위	14
<그림 IV-1> 대전광역도시권 개발축 구상	19
<그림 IV-2> 대전광역도시권 교통축 구상	20
<그림 IV-3> 대전광역도시권 녹지축 구상	20
<그림 IV-4> 대전광역도시권 공간구조 구상	20
<그림 IV-5> 생활권 구분도	21
<그림 V-1> 토지이용구상도	24
<그림 V-2> 광역녹지축 구상	25
<그림 V-3> 광역경관축 구상	26
<그림 V-4> 관광네트워크 구상 및 여가공간 배치도	27
<그림 V-5> 도로구상도	28
<그림 V-6> 철도구상도	29
<그림 V-7> 광역공급이용시설 확충계획도	30
<그림 V-8> 자연환경권역 구분도	32

I. 계획수립의 개요

1. 광역도시계획의 성격(변경 없음)

- 광역도시계획은 전략계획, 정책계획, 지침계획의 성격을 지니는 계획으로 청사진적 계획과 구분됨.
- 전략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은 장기 미래상 제시보다는 광역도시권 차원의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며,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.

2.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배경(변경 없음)

- 정부는 1999년 7월 「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」을 확정 발표하면서 대전권을 포함한 7개 대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기로 방침을 확정.
- 1999년 9월 「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」을 작성하여, 광역도시계획 수립내용을 규정

3.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의 배경

-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지정 이후,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으나, 인구증가 및 산업화에 따른 도시용지의 수요에 대처할 수 없었고, 획일적인 구역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 등에 따라 해제요구가 비등하였다.
- 이에 「2020년 대전권광역도시계획(2005)」을 수립하여, 일부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실시하였으나, 적정한 수요에 대응하는 산업단지 조성이나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용지가 부족하여 원활한 도시발전을 유도하지 못함에 따라 추가적인 해제가 요구되었다.
- 대전광역권의 여건변화를 수용하고,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현안사업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추가적 해제 및 조정이 필요하며, 이러한 해제 및 조정은 「개발제한구역조정 및 관리계획(2008. 9)」에 기초하고 있다.

4.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범위(변경 없음)

□ 시간적 범위

- 광역도시계획 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 내외를 기준으로 하여, 계획의 목표연도는 2020년, 계획기간은 2001년부터 2020년까지로 함.

□ 공간적 범위

- 계획면적 : 4,633.87km² (대전광역시, 충청북도 2군 4면, 충청남도 3시 2군)

□ 내용적 범위

-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광역도시권 설정과 현황 및 특성분석, 목표와 전략수립, 공간구조구상, 부문별계획, 생활권별 정비, 개발제한구역 조정, 집행 및 관리계획을 수립



<그림 I-1 : 대전광역도시권 공간범위>

II. 현황 및 특성 (변경 없음)

1. 현황분석

- 대전광역시가 인접 시·군에 비하여 경제활동, 도로,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여건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.
-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시·군에서는 논산, 공주, 연기 등이 도시규모 및 인구 등에

대한 위계상 대전광역시의 다음을 차지하고 있음.

- 광역도시권내 시·군의 주택보급률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2. 발전잠재력 및 제약요인

□ 발전잠재력

- 국가행정기능 및 연구·과학기술의 중추도시권으로 부각
- 환 황해권 시대의 중부권 거점도시로서의 위상 강화
- 고속철도 경유 및 국가기간교통망의 결절지로서 위상 제고
- 개발가능 토지자원과 녹지공간의 활용성
- 문화·관광도시권으로서의 기능 부각

□ 제약요인

- 중심도시와 충남·북 인접지역간의 행정적·기능적 연계성 취약
- 도시성장의 물리적 기반 및 지역개발 선도 산업기반 취약
- 도심지역의 급속한 공동화 진행
- 도시내부의 공간통합성 및 내부순환 교통체계 미흡
- 토지이용상의 제약

3. 향후여건변화와 전망

- 동북아 경제권의 급성장과 중국의 국제무역비중 증대
- 지식·정보화사회의 도래와 디지털경제로의 산업구조 변화
-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국토통합성 강화
- 환경친화성·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 증대
- 휴식·레저기능의 증대 등 생활패턴의 변화

4. 전략과제

- 제4차 국토개발구상과의 통합적 공간체계 형성
- 세계화, 지식·정보화사회의 여건변화에 발전적 부응
-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지향하는 계획목표의 설정
-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와 연계한 도시성장관리의 기본원칙 추구

Ⅲ. 계획의 목표와 전략 (변경 없음)

1. 대전광역권의 미래상

- 자립경제기반을 갖춘 중부권 거점도시 권역
- 도시지역간의 균형발전 된 권역
-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을 갖춘 권역

2. 기본목표

- 첨단과학기술이 집적된 지식·정보 거점도시 구현
- 쾌적하고, 안전하고,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

3. 계획의 목표

- 첨단과학기술의 지식·정보거점도시권의 구현으로 자립경제기반 구축
- 도시·지역별 적정 기능배분과 충청권의 균형발전 도모
- 자원절약형 토지이용관리와 공간구조 구축
- 개발제한구역의 적정관리·이용으로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

4. 기본전략

- 도시·지역별 적정 기능배분과 균형발전 도모
- 첨단과학기술이 집적된 지식·정보거점도시권 구현으로 자립경제기반 구축
- 자원절약형 토지이용관리와 공간구조 구축
- 개발제한구역의 적정 관리·이용으로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

5. 세부전략 및 원칙

- 중심도시의 외연확산 방지와 주변 소도시의 적정개발 유지
- 자원 절약적 토지·시설이용과 공간구조 재편
- 기성시가지 정비를 통한 압축적 도시개발 지향
- 기반시설과 연계된 개발행위 유도
- 자연환경과 조화된 도시경관관리와 스카이라인 형성
- 개발제한구역의 적정관리와 활용

6. 주요지표

- 대전광역도시권의 생활환경 지표는 과거추이와 여건변화를 반영하고, 제4차 국토

계획, 대전비전 2020 및 2016년 대전도시기본계획,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(안),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(안) 등의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에서 제시한 생활환경지표 등을 검토하여 광역도시권의 토지이용 및 계획인구 등을 고려하여 조정

<표 III-1 : 주요 생활환경지표>

구 분		대전광역시권 현황(1998)			2020년	
		대전	충북	충남	대전광역시권내	
인 구		1,345,684	144,189	458,892	275만	
총 가구수(총 세대수)		417,523	46,767	147,568	103만6천	
가구당인구수		3.22	3.08	3.11	2.64	
경제활동인구(시,도총인구대비)		572천	671천	906천	123만	
공원 녹지	자연, 도시공원 총면적	45.00km ²	75.33km ²	96.25km ²	260km ²	
	도시공원 개소	222개소	30개소	141개소	470개소	
	1인당공원면적	33.4m ²	522.5m ²	209.7m ²	96m ²	
교 통	자동차대수	326,989	28,505	92,499	120만대	
	도로포장율(%)	98.6%	63.1% (도전체)	71.1% (도전체)	100%	
통 신	PC보유율(2000년7월)	47.8%	15.6%	24.2%	50.0%	
	인터넷 이용율	21.8%	16.8%	12.3%	60.0%	
주 택	일반 세대수	532,269	46,757	147,568	83만	
	주택수	500,880	45,165	138,739	83.8만	
	보급율	94.1%	97.2%	94.2%	101%	
상수도	급수인구	1,262,520	71,223	224,586	260만	
	상수도보급율	93.8%	49.3%	49.0%	96.3%	
	1인1일급수량	410 ℓ	289 ℓ	320 ℓ	505 ℓ	
하수도	하수처리율 (처리인구기준)	90.2%	36.5%	24.6%	95.0%	
폐기물	폐기물 관리구역 비율	면적비	73.4%	87.5%	97.2%	95.0%
		인구비	99.1%	93.4%	94.7%	99.0%
기 타	의료병상수		8,420	625	3,271	19,511
	1병상당인구수		160	231	140	138
	의사1인당인구수		577	2,031	1,103	530

IV. 공간구조 구상 (변경 없음)

1. 대전광역도시권의 공간적 위상

- 국토공간구조상 환황해경제권에 속하고 중국 교역의 전진기지로서 장래 발전가능성이 높은 입지적 특성을 보유.
- 대전광역도시권은 21세기 환황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서해안 배후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이 기대됨.
- 전국으로의 인적, 물적 교류비용의 최소화가 가능하고,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한 첨단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.
- 경부고속철도와 대전-통영 및 대전-당진간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교통망의 개통은 대전광역도시권을 통해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.

2. 공간구조 진단

- 대전광역시 중심의 단핵도시구조 형성
- 일부지역의 편중개발 및 도농통합기능 미약
- 지역간 연계기능 미흡
- 도시 기간산업기능의 약화

3. 공간구조 개편방향 및 전략

핵심과제

- 국토공간통합의 새로운 거점 구축
- 다핵공간구조의 정립
- 집약적 토지이용 및 광역교통체계 구축
-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광역녹지체계 구축

기본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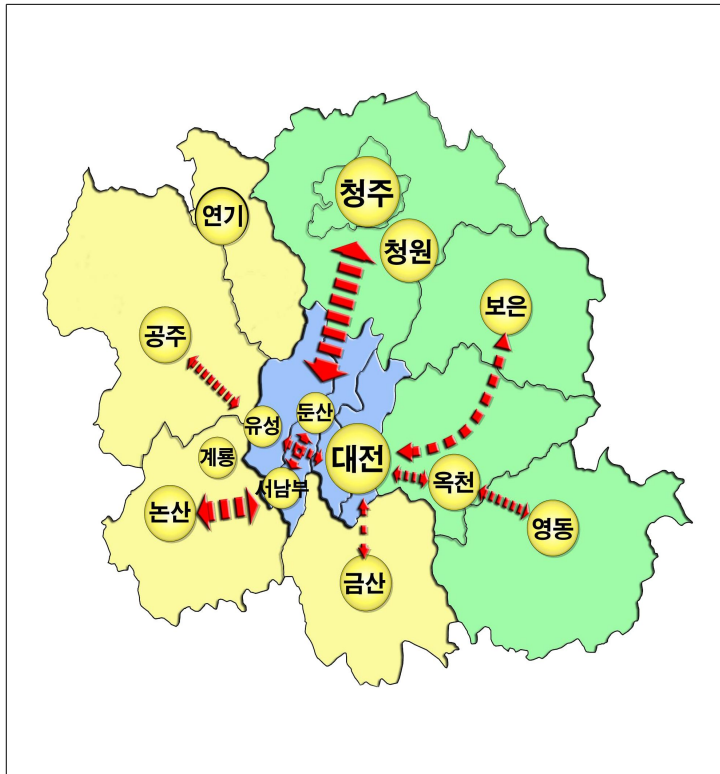
- 대전, 청주의 상호 기능보완으로 경쟁력 있는 광역도시권 육성
- 국가중추 행정 및 업무기능의 수요기반 구축
- 경쟁력 있는 자족경제권으로 육성
-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

기본전략

- 도시기능, 교통망, 정보·교류망의 광역적 이용체계 구축
- 도시공간구조 개편에 의한 대전광역도시권의 기능 확충
- 첨단산업의 집중육성으로 경제기반 강화
- 도시별 적정인구 수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신시가지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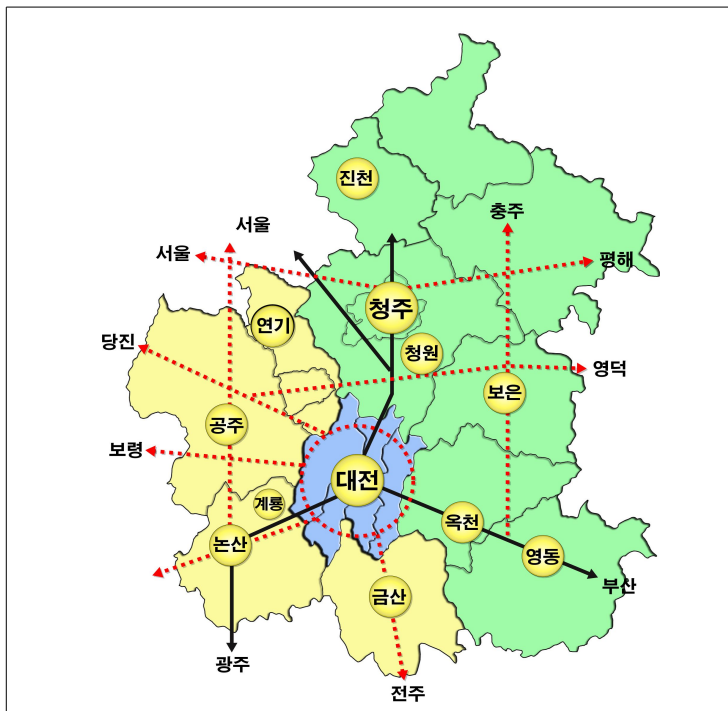
4. 공간구조 구상

○ 개발축 구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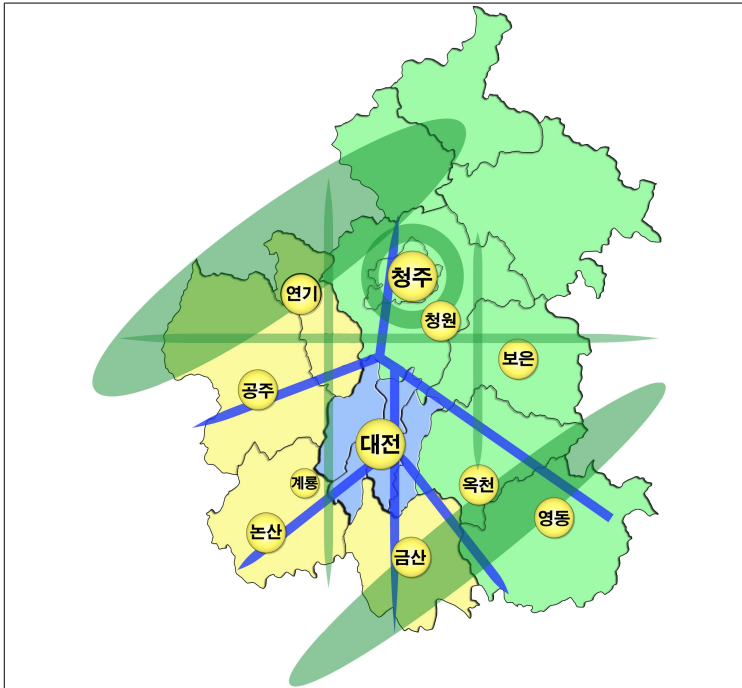
<그림 IV-1 : 대전광역도시권 개발축 구상>

○ 교통축 구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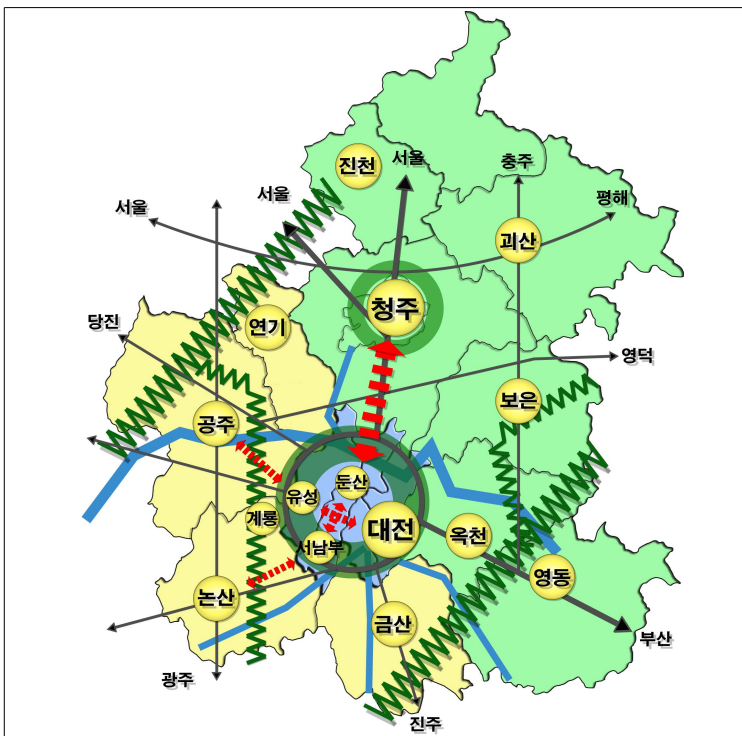
<그림 IV-2 : 대전광역시권 교통축 구상>

○ 녹지축 구상



<그림 IV-3 : 대전광역시권 녹지축 구상>

○ 공간구조 구상



<그림 IV-4 : 대전광역시권 공간구조 구상>

5. 생활권중심의 다핵화 추진방향

□ 생활권 설정

- 공간구조 개편방향 및 광역교통 등과 연계하여 6개 생활권을 설정
 - 중심생활권 : 도심권, 부도심권
 - 동부생활권 : 영동권, 옥천권
 - 서부생활권 : 공주시 도심권, 정안권, 유구권
 - 남부생활권 : 금산읍 중심의 중부권 외 2개소권
 - 북부생활권 : 청주시와 인접한 3개소권



<그림 IV-5 : 생활권 구분도>

<표 IV-1 : 생활권별 정비과제>

구 분	정비과제
중심생활권	• 국가행정·과학기술·업무·금융의 중추기능 강화 및 대전광역도시권의 중심도시로서의 기능 확충
동부생활권	• 물류유통단지 육성 및 배후단지 조성 • 바이오영농특화지구 육성을 위한 재정·기술지원·농업 및 관광을 위한 경관보전지구 조성 • 오송 생명과학 산업단지와 연계한 약용식물 특허단지 조성
서부생활권	• 역사·문화·관광도시로의 기능강화 및 청정 생태농업도시 건설
남부생활권	• 인삼 관련 산업 및 농산물 물류·유통기능 육성 및 청정 환경 기반의 생태 산업 육성
서남생활권	• 대덕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형성 및 근교형 산림·수변생태환경 조성
북부생활권	• 청주광역도시권 계획과 연계,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인력·지식정보 서비스 지원기능 확충 및 북부권 거점유통기능의 강화 • 친환경 전원주거단지 조성 •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여가·오락 및 숙박시설 확충

□ 생활권별 정비방향

○ 중심생활권

- 도심권

- 둔 산 권 : 국가중추 행정·업무·금융 중심기능
- 기존도심권 : 광역도시권의 고차적 상업·교통·정보 중심기능

- 부도심권

- 유 성 권 : 과학기술·국제적 종합관광·위락·휴양 리조트 및 국제교류기능
- 진 잠 권 : 논산, 계룡 등과 연계한 물류·유통상업기능
- 신탄진권 : 연기, 청주 등의 공업기능과 연계된 첨단과학산업벨트 중심기능

○ 동부생활권

- 영동권 : 첨단 생태농업지역 및 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

- 중심권(영동읍) : 충북 남부대생활권의 행정·정보·문화의 중심지
- 중부권(심천면, 용산면, 양강면) : 배후농촌에 대한 생산지원기능과 생활편익시설 지원기능 및 첨단 농업기술의 중심지 기능
- 동부권(황간면, 추풍령면, 매곡면, 상촌면) : 레저 및 관광기능과 편리한 교통 및 전국적 지명을 자랑하는 특산물의 물적 유통기능
- 서부권(양산면, 학산면, 용화면) : 관광산업 중심기능과 관광농업 및 생태농업의 중심지 기능

- 옥천권 : 물류 유통, 대도시 배후 친환경 전원도시 및 경관보전지역

- 중심권(옥천읍) : 대전 이남지역을 서비스하는 물류유통 중심지, 벤처산업 육성 및 행정, 사회, 문화, 교육의 중심지 기능
- 북부권(안내면, 안남면, 군북면) : 친환경 전원주거 및 수변 휴양 위락기능
- 동부권(청산면, 청성면) : 레저 및 원예, 목축을 중심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
- 남부권(이원면, 동이면, 군서면) : 대도시 근교권의 전원주거 및 여가지대로서 동남 부권 물류단지 및 과일·묘목의 특화 단지화

○ 서부생활권

- 공주도심권(동부 8개동, 장기면, 의당면, 우성면) : 서부생활권의 중심도시, 백제의 고도로서 문화·관광·교육의 거점, 간선교통망 결절지인 우성은 첨단산업·유통의 거점

- 정안권(정안면) : 전원주거, 특산물 유통 및 녹색관광 지원 거점

- 유구권(유구읍, 사곡면, 신평면) : 농촌지역 서비스 지원, 직물산업 특화지역, 마곡사·마곡온천 등 관광지 지원

- 탄천권(탄천면, 이인면) : 농촌지역 서비스 지원, 전원주거, 백제문화촌·백제대로 건설 등과 연계한 문화관광 배후지원 가능

- 반포권(반포면, 계룡면) : 농촌지역 서비스 지원, 전원주거, 백제문화권 연계 관광지, 계룡산국립공원 및 근교 관광농원 등에 대한 지원

○ 남부생활권

- 중부권(금산읍, 금성면, 제원면, 군북면) : 인삼약초 가공 및 유통의 중심지, 공공 서비스·지역편의시설 및 복지·교육·의료·문화서비스의 공급기지, 금산지역 및 주변지역의 단기관광수요 흡수
- 북부권(진산면, 복수면, 추부면) : 고속도로 및 대전과의 유리한 접근성을 이용한 농수산물 물류 거점, 중부대학교 주변에 대학촌을 조성하여 대학과 지역발전 연계, 대전대도시권 및 중부권의 개발수요 흡수(여가시설, 근교농업, 전원주택 등)
- 남부권(남일면, 남이면, 부리면) : 저개발지역 주민의 최소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기초 중심지, 역사·문화자원과 풍부한 임야를 활용한 테마관광활동 지원, 금강 주변의 다양한 수변활동 제공

○ 서남생활권

- 논산권(부창동, 취암동, 은진면, 채운면) : 중심상업 및 공공행정기능
- 강경권(강경읍) : 물류유통 및 교육기능
- 연무권(연무읍, 가야곡면) : 특수시설 지원 문화체험기능
- 연산권(연산면, 부적면) : 농산물 유통 및 역사·문화관광기능
- 성동권(성동면, 광석면) : 물류유통 및 산업기능
- 상월권(상월면, 노성면) : 역사·문화기능
- 양촌권(양촌면, 벌곡면) : 관광휴양 및 특화농업기능
- 계룡권(계룡시 두마면, 남선면) : 국가중추기능(국방)분담 신도시기능

○ 북부생활권

- 중심권(청주시) : 정주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한 국제교류, 행정·교육·정보·물류의 중심지로서 첨단지식산업 육성
- 연기권(연기군) : 첨단지식산업의 육성 및 물류기지의 전국거점화
- 청원권(청원군) : 전기전자·보건의료 관련 첨단산업 육성, 물류기지의 전국거점화, 수변환경을 이용한 호반관광과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, 친환경 전원주거단지

V. 부문별 계획 (변경 없음)

1. 광역토지이용

□ 토지이용현황 및 문제점

- 광역적 차원의 성장관리 미흡
- 광역도시권의 도시공간체계의 연계 미흡
- 계획적 개발, 관리 미흡 및 도시적 토지이용 제약
- 기성시가지의 토지이용 비효율 및 기능 분담 미흡
- 특화산업 및 산업단지 개발의 문제점 대두

□ 기본목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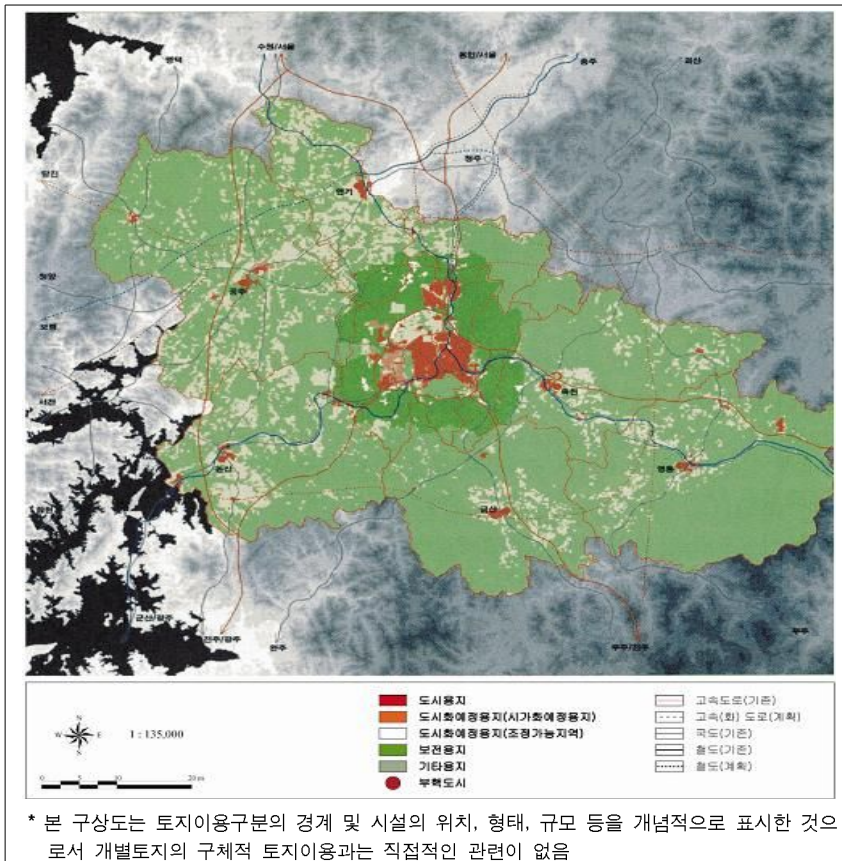
- 균형적인 도시체계 확립 및 광역적 도시 공간 수요의 합리적 배분
- 개발과 보전의 합리적 조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자원절약적 토지이용 구상
- 교통계획 및 공원·녹지계획 등 부문별계획과 부합하는 구상이 되도록 함
- 양호한 자연환경·경관의 보전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이 가능하도록 구상

□ 핵심과제

- 균형적인 도시체계 확립 및 광역적 도시공간 수요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지역별 도시성장관리의 강화
- 개발과 보전의 합리적 조화를 통한 효율적이고 자원절약적 토지이용체계 구축
- 지역특성별 도시개발 및 정비전략 추진

□ 전략 및 실천계획

- 광역도시권의 특징과 도시기능을 감안한 토지이용 구분
- 도시용지의 통합관리 및 효율적 이용
- 도시화예정용지의 단계별 개발체계 확립
- 보전용지 설정을 통한 도시성장의 관리
- 기타용지의 지정을 통한 토지관리의 유연성 제고
- 거점도시 중심의 상호연계-보완형 자족도시권 형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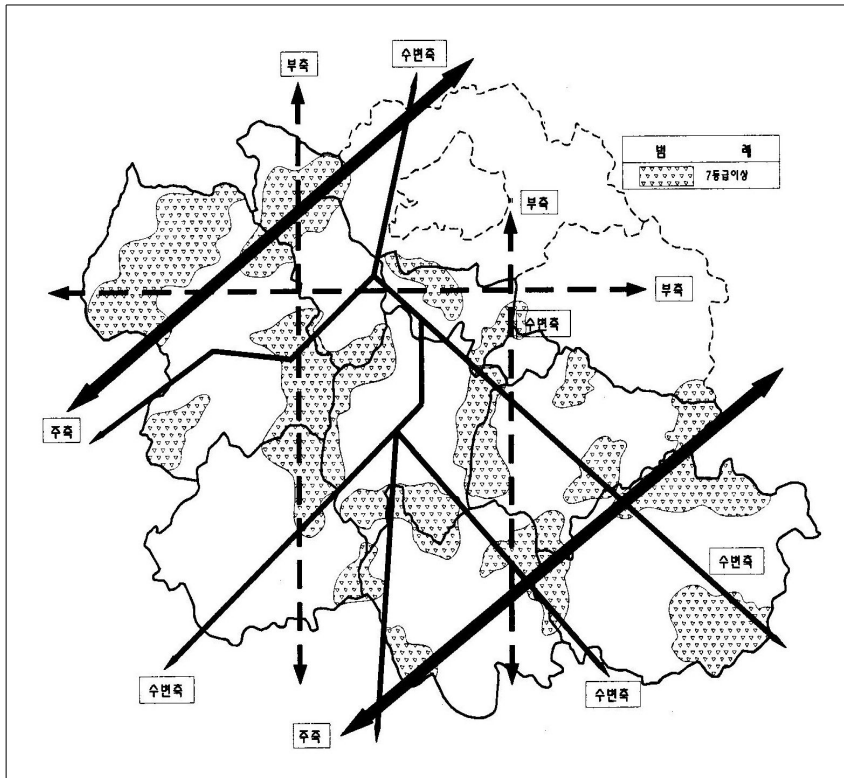


<그림 V-1 : 토지이용구상도>

2. 녹지, 경관 및 여가

□ 녹지관리 : 전략 및 실천계획

- 주녹지축과 외곽 녹지를 연결하는 환상형 녹지축 설정
- 대전권내 광역적으로 분포된 수변공간의 적극 활용
- 광역녹지축의 적극적인 연결과 관리
- 도시공간구조와 연계한 공원녹지의 연결 강화
- 도시 내 녹지량 확충과 공원조성 확대
- 녹지기본계획의 수립
- 녹지보전 및 확충을 위한 기준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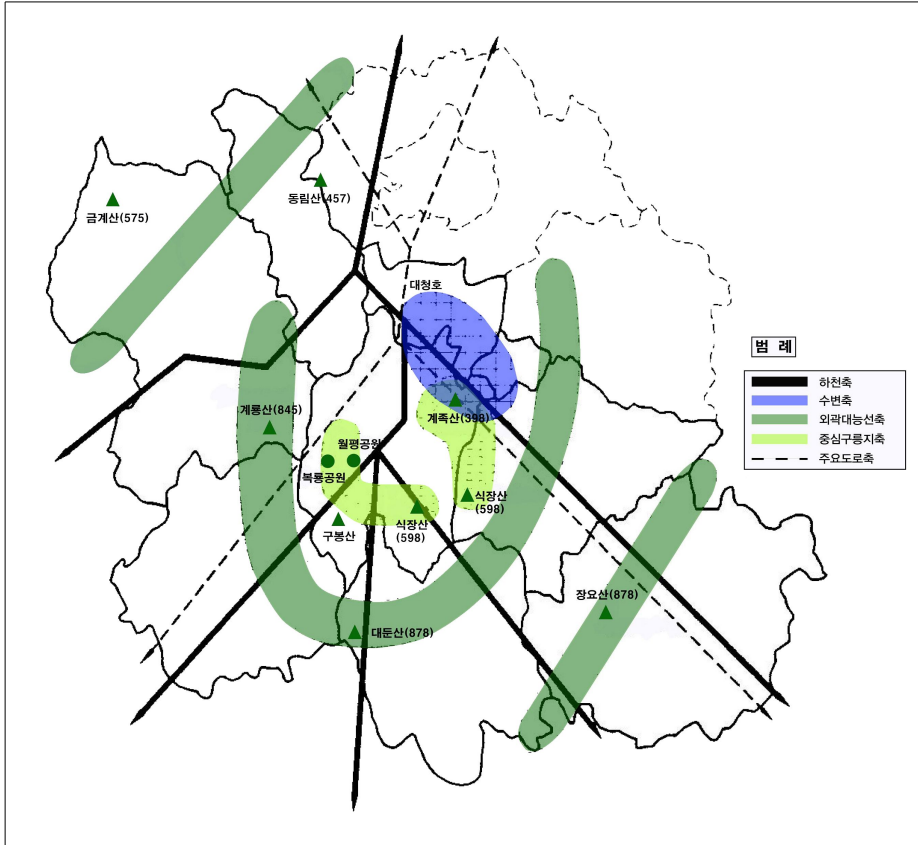


<그림 V-2 : 광역녹지축 구상>

□ 경관관리 : 전략 및 실천계획

- 광역경관축의 구축
- 자연경관 우수지역의 경관관리지침을 통한 관리 강화
- 주요 간선도로변 경관 특성 강화를 위한 개발지침 수립
- 중요한 역사자원이나 건축적·미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보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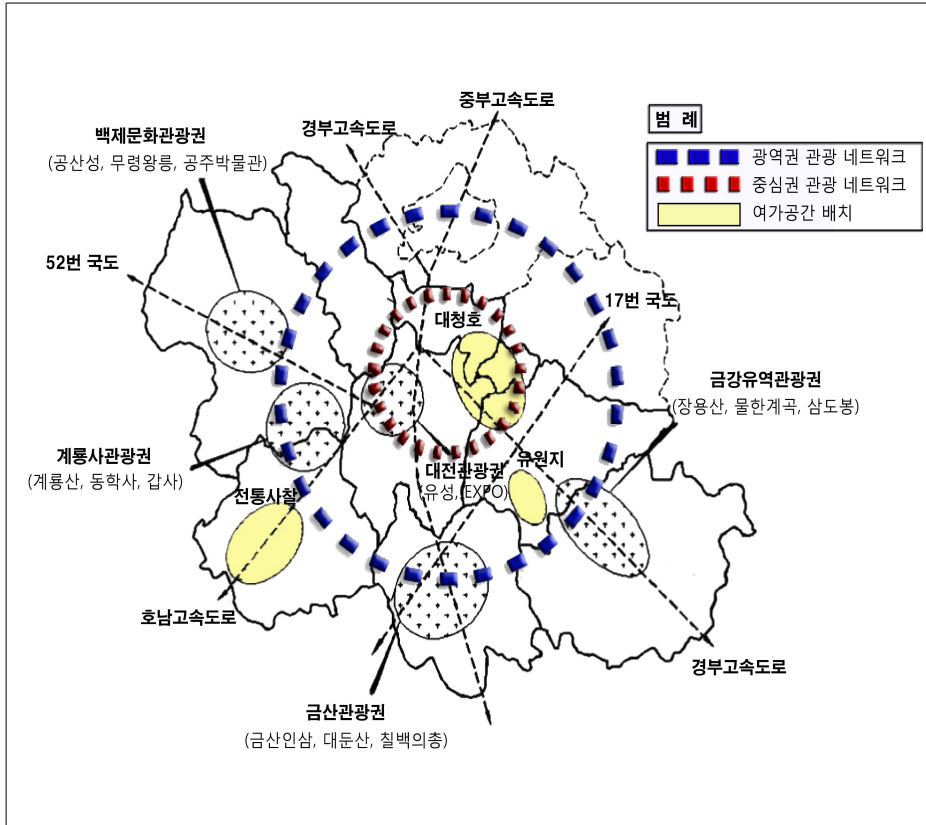
- 지구특성에 맞는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요소별 관리지침을 제시하여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반영
- 경관기본계획과 도시(군)기본계획의 연계성 강화



<그림 V-3 : 광역경관축 구상>

□ 여가공간 : 전략 및 실천계획

- 관광네트워크 구축 및 여가공간 배치
- 규모의 경제성과 경쟁력을 갖춘 통합관광권 개발 및 대표적 관광상품 개발촉진
- 지역특성을 반영한 여가·관광특화프로그램의 수립과 시·군계획에 반영
- 문화·관광 중심지역의 설정
- 여가관광 활성화 방안
- 녹지축 등을 활용한 근린여가공간의 조성



<그림 V-4 : 관광네트워크 구상 및 여가공간 배치도>

3. 광역교통

현황 및 문제점

- 광역도로망시설의 부족과 낮은 효율성
- 주요 교통축의 도로혼잡 가중 및 대체 수단 부재
- 광역철도망의 확충 미흡
- 종합화물운송체계 구축 미흡 및 물류시설 부족
- 국제교류기반시설인 국제공항 등의 접근성 부족

교통여건변화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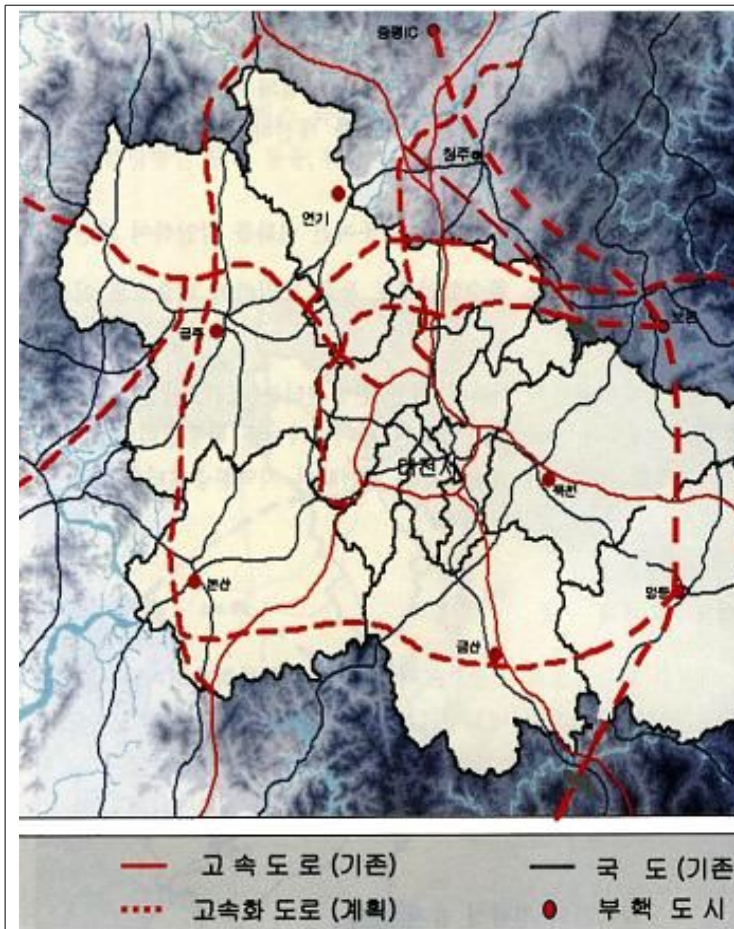
- 교통수요의 지속적인 증가
- 경제활동의 세계화와 국제교통량 증가
- 교통시설의 고급화 및 친환경성 강화

핵심과제

- 공간구조상 국토중심부의 교통축 역할 감당
- 권역내 광역교통망 구축
- 간선교통시설 기능증진 및 지역통합성을 위한 간선교통망체계의 정립
- 권역의 공간구조 구상과 토지이용을 뒷받침하는 교통축의 확립

□ 전략 및 실천계획

- 전국 차원의 교통중심지 및 관문기능 강화
- 권역내 동서 및 순환연계 도로망체계 구축
- 지역간 광역철도 보강
-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이용자 중심의 종합환승체계 구축
- 대전권 종합화물수송체계 구축
-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간의 정합성 유지 강화
- 종합적인 광역교통행정체계의 구축



<그림 V-5 : 도로구상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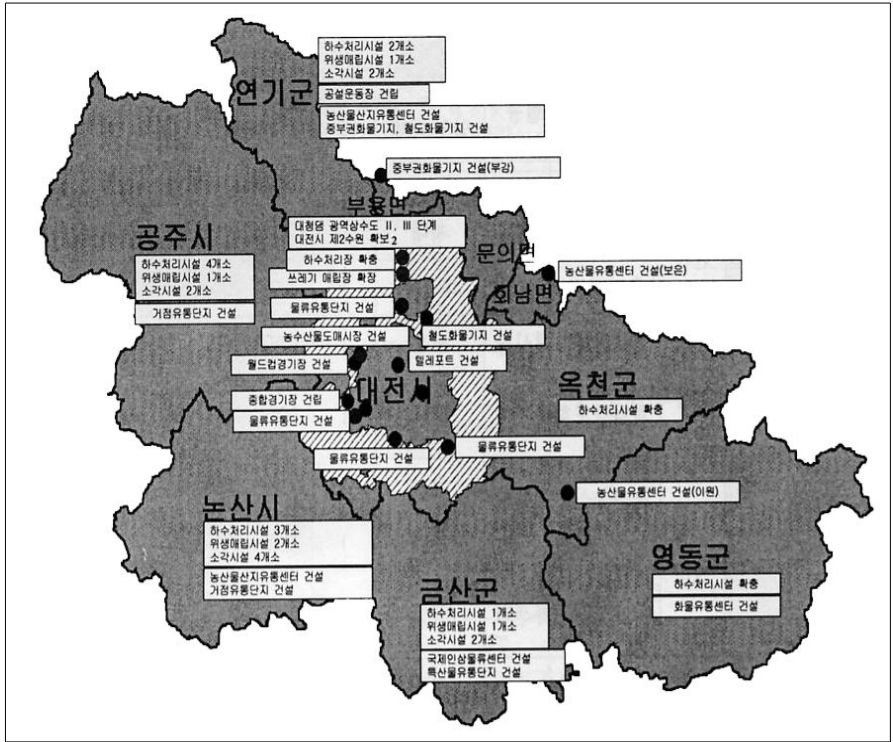


<그림 V-6 : 철도구상도>

4. 광역공급 및 이용시설

□ 배치원칙

- 도시 광역화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수적임
- 도로, 철도, 쓰레기매립장, 상수도 급수원 개발, 하수종말처리장 등 각종 시설물을 광역적으로 접근함.
- 대전광역도시계획권을 개별지역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따라 5개의 시설배치 권으로 나누어 시설을 차등 배치함.
- 5개의 시설배치 권역은 중심생활권(대전광역시), 동부생활권(옥천·영동·보은), 서부생활권(공주시), 남부생활권(금산군), 서남생활권(논산시), 북부생활권(청원, 연기) 등으로 구분됨.
- 혐오시설을 광역적으로 다룸으로써 국토의 비효율적인 이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, 물류시설, 정보·통신시설, 체육시설 등을 생활권별 균등하게 배치함으로써 도시 중심지역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외곽지역의 개발을 촉진.



<그림 V-7 : 광역공급이용시설 확충계획도>

5. 방 재

□ 현황과 문제점

- 방재를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로 재해의 빈번한 발생과 피해의 대규모화 우려
- 사전 예방적 종합적 방재대책의 부재

□ 핵심과제

-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
- 광역적 수방체계의 구축
- 재해의 다양성에 대비한 시가지 방재 및 위험시설 방재계획의 수립

□ 전략 및 실천계획

- 방재를 고려한 토지이용 지침의 수립
- 오픈스페이스 및 시설을 활용한 방재대책의 마련
- 수해 방재시스템 구축 및 수방재지침의 수립
- 친환경적 우수관리시스템의 도입
- 시가지 방재 및 위험시설물 방재계획 수립
- 재해위험도에 따른 지역관리와 광역적 방재 정보전달 체계 구축

6. 환경보전

□ 대기질 : 전략 및 실천계획

- 대전광역시권의 광역 대기질 관리계획 수립
- 각종 자료를 지속적·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
- 도시내의 하천,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등은 바람 통로의 역할을 하므로 건물이나 지형에 의해 바람길이 막히지 않도록 함.
- 토지이용계획단계에서 풍향과 풍속을 고려해 건물의 배치방향 및 건물의 높이, 간격을 고려함.
- 광역교통망의 구축시 대기오염 저감을 고려한 효율적 교통망 구축
- 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
-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공원이나 완충녹지대 등을 조성토록하는 한편 대기오염에 강한 수목 식재
- 간선도로의 접도구역이나 공단과 주거단지, 농경지, 임야 사이에 완충녹지대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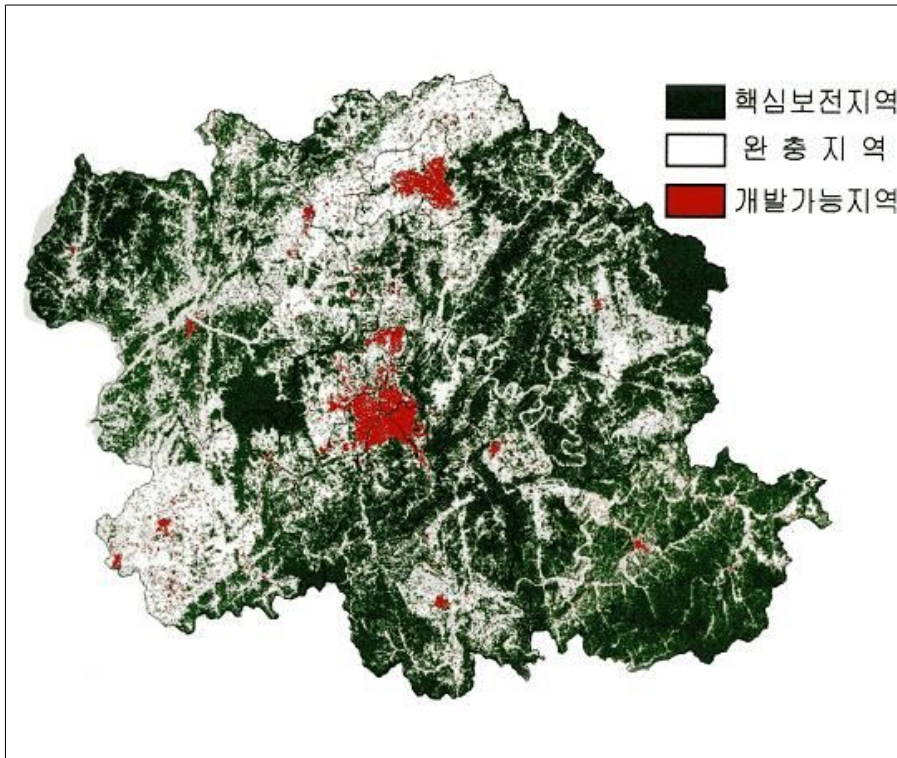
□ 수질 : 전략 및 실천계획

- 상수도시설의 정비·확충 및 하수관 정비, 하수처리장 신·증설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
- 비점원오염원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자연형 정화시설 설치 및 상류지역에 물 이용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수질보전 인센티브제도 시행
- 수계특성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장·단기 수질관리 종합대책 수립
-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장, 축사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등 사전 예방적 유역관리 도모
- 주요 호소와 하천에 대한 자연정화능력의 극대화를 위해 수변공간의 오염방지 노력 및 하천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
- 댐 등 폐쇄수역 상류의 농촌지역에는 오수처리시설(합병정화조)을 공급하고,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시스템을 구축
- 국립공원, 계곡 등에서는 일체의 취사, 야영을 금지하고 소정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비 또는 규제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활용

□ 자연환경 : 전략 및 실천계획

- 생태계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조사가 필요하고, 기초조사에 의해 감소 및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의 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등 대책 마련
- 핵심보전지역은 보호대책을, 완충지역은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 보전

- 및 개발방안을, 개발가능지역은 친환경적 개발방안을 마련
- 핵심보전지역의 토지 중 사유재산인 경우에는 개발제한으로 인한 보상계획을 수립하며, 우량녹지·보호대상농지 등 환경적 외부효과가 큰 경우는 토지매입 또는 수혜의 정도에 따라 환경개선 보상금을 지급하는 재정계획 수립
 - 습지의 보전은 다각적인 프로그램 마련
 - 시가화지역의 확장에 따른 대전광역시 주변 환상형 녹지축 단절지역에 대한 복원 계획 마련
 - 농지의 보전은 정밀조사를 시행하고, 이를 기초로 우량한 농지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보호가치가 낮은 쪽으로 개발 유도
 - 비오톱을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고, 이를 주변의 녹지 및 수변과 연계하여 하나의 녹색네트워크를 구축
 - 공간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생물다양성 보존
 - 환경전문가가 사전에 개발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는 정책 도입
 - 생태 도시적 도시개발 유도
 - 도시를 광역적 녹지네트워크와 연결
 -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건축물 녹화기법 등 적극 도입
 - 친환경적 대체에너지를 실용화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관련시설의 보급을 확대하는 프로그램 운영



<그림 V-8 : 자연환경권역 구분도>

VI.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(전면 수정)

1.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기본방향

□ 기본방향

-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보전할 가치가 낮은 지역은 부분적으로 산업용지 등 도시용지로 해제·활용을 허용하되, 지가상승이나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을 방지한다.

□ 해제가능 규모

- 추가해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, 기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예정총량 중 활용하지 않은 잔여면적은 실제 필요한 곳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(전환해제)
- 해제 가능규모는 기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허용총량 및 권역별 해제가능 총량의 10~30% 범위 내에서 적정규모로 설정한다.

□ 해제대상지 선정 및 제척기준

- 기존시가지·공단·항만 등과 인접하여 여건상 주거·산업·물류단지로 개발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큰 지역으로서 도로 등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 요소가 적은 지역
- 표고·경사도·농업적성도·임업적성도·식물상·수질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
- 난개발 방지,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정형화된 개발이 가능한 지역
- 다만 선정기준에 포함된 지역의 경우에도 다음 기준에 포함되면 반드시 제척토록 한다.

<표VI-1 : 제척기준>

- | |
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<u>개발과정에서 대규모 환경훼손이 수반되는 지역</u> ② <u>도시간 연담화가 우려되는 지역, 다른 지역과의 갈등을 초래하는 지역</u> ③ <u>지가급등·투기행위 성행·지장물 낚설 등 지가관리 실패지역</u> ④ <u>수질보전지역, 홍수 등 재해위험지역, 공항주변 등 도시개발억제지역</u> ⑤ <u>당해 지역 개발로 인해 인접지역의 재개발 곤란, 심각한 교통문제 등 도시문제를 크게 악화시킬 우려가 높은 지역</u> |
|--|

□ **해제절차**

- 해제되는 지역은 광역도시계획 변경(해제가능 총량 변경) 후, 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과정을 통하여 정한다.

□ **개발방향**

- 해제되는 지역은 주변 자연환경에 조화되도록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, 개발로 인한 혜택은 공공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한다.
- 주택단지는 생태친화적(Eco-friendly) 개발, 그린홈 등으로 이루어진 에너지 절감형 저탄소 녹색 주거단지로 조성한다.
- 연구단지에는 신재생 에너지 등 Green-Tech 관련 연구시설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도록 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.
- 산업단지는 저공해 단지로 개발하되,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체들도 저렴한 임대료 등 적은부담으로 입주토록 유도한다.

2. 시도별 해제총량 설정 및 활용방안

□ **해제가능총량 종합**

- 「2020년 대전권광역도시계획(2005)」에서 제시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은 31.279km²이며, 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가 24.023km², 충청북도가 4.141km² 그리고 충청남도가 3.115km² 이다.
- 금번 「2020년 대전권광역도시계획(변경)」에서는 기 수립된 대전권광역도시계획에서 설정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30% 범위내에서 조정한다.
- 따라서 2005년 수립된 31.279km²의 27.6%인 8.646km²를 추가 해제가능총량으로 설정하였다. 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가 7.206km², 충청북도가 1.242km² 그리고 충청남도가 0.198km² 이다.

<표VI-2 : 해제가능총량의 종합>

(단위 : km²)

구 분	계	대전광역시	충청북도	충청남도
기존 해제계획총량	31.279	24.023	4.141	3.115
해제잔여면적	19.049	15.916	1.593	1.540
추가 해제가능총량	8.646	7.206	1.242	0.198
향후 해제가능총량	27.695	23.122	2.835	1.738

* 해제잔여물량은 2009년 7월 기준

□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

〈대전광역시〉

- 도시기반산업 강화 차원에서 해제지역을 산업단지로 조성한다.
- 산업단지는 대덕특구의 개발구상과 연계하여 첨단산업적 기능을 부여하고, 친환경경복합단지 형태로 조성함으로써,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.

〈충청북도〉

- 지역산업구조의 개선측면에서 친환경경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토록 한다.

〈충청남도〉

- 1980년대 말 620사업으로 조성된 계룡대 해군관사(아파트) 부지 및 공공시설용지(하수종말처리장)를 적절히 활용 및 관리한다.

VII. 집행 및 관리계획 (변경 없음)

1. 광역도시계획 집행체제

□ 광역행정 협조체제와 역할분담

-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경직성과 획일성을 극복하고 대전광역시 권 주민의 자율적인 관리능력을 증진하여 지역의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토해양부, 대전광역시,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의 역할 부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.
- 국토해양부, 대전광역시, 충청북도·충청남도간의 역할분담을 위한 기본방향
 - 국책사업 등을 제외한 광역도시권내 토지이용과 규제에 관한 정책이나 계획은 시·도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지역여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함.
 - 자력적인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기능(시·도의 인력, 재정, 전문기술 등)이 미흡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가 지속적으로 지원.

□ 관련주체간 협력체제 구축

- 광역도시계획 협의조직의 발전적 개편
- 광역행정협의회의 기능강화
- 자치단체 간 계약방식의 활성화

2. 광역도시계획의 관리

□ 광역도시계획의 집행

- 광역도시계획에 제시하는 정책사항은 원칙적으로 시·군의 도시기본계획수립과 도시계획 입안 및 개발사업 등을 유도하거나 조정하여 추진
-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변경 심의시 광역도시계획을 기준으로 검토
- 시·군간 이견 조정이 어렵거나 광역적 현안사안으로서 중요한 정책사항인 경우에는 광역지자체가 직접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사업을 집행

□ 정책사항의 평가 및 관리

- 시·도가 참여하고 광역도시계획기구가 중심이 되어 5년 단위로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정책들의 집행사항을 평가
- 광역도시계획기구내에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용

3. 투자우선순위 및 재원조달

□ 투자우선순위

-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적시성 등 적정도시기반시설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조건으로 하고,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인 경우에는 시급성이 높은 것을 선정기준으로 설정

□ 재원조달 방안

- 사업실행을 위한 재원으로는 중앙정부의 재원, 지방정부 재원, 사용자 부담, 민간 기부금, 현물서비스 등을 들 수 있음
- 광역개발사업은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되, 사업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참여로 지역발전과 성장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방안을 모색

【관 계 법 령】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11조(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) ① 국토해양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: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
 2.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·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: 관할 시·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
-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시·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·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제15조(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) ①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·도,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-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·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, 관계 시·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그 시·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·도,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

제16조(광역도시계획의 승인) ① 시·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(시·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□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

1-5-2.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재검토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광역계획권의 급격한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,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정비할 수 있다.

3-5-1. 기본원칙

(1)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(이하 “해제가능 총량”이라 한다)은 시·도별로 배분·제시하되, 도 지역내 시·군에 대하여는 시·군별로 배분·제시하거나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한 권역을 설정하여 해제가능 총량의 범위내에서 상·하한 범위형태로 배분·제시한다. 다만, 서민주택공급 건설계획 등 국가계획(국가의 중요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을 말하며, 이하 “국가계획”이라 한다)과 관련된 경우에는 권역별 해제가능총량만 제시할 수 있다.

3-5-2. 해제가능총량 설정한도

(1) 해제가능총량을 확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서 반영된 해제가능총량 이외에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.

- ① 최초로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서 반영된 권역별 해제가능총량의 10~30% 범위내에서 적정수준을 설정한다.